파주시공고 제2026-2863호

2026년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2026년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11. 4.

파주시장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2027년 ~ 2030년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위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추천분야	소속 기관·단체	심의회 직위	성 명
시민사회단체	한국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장	위원장	김웅기
시민사회단체	파주시새마을회 부녀회장	위 원	김정화
법조계	경기북부변호사회 변호사	위 원	남광순
시민사회단체	파주소방서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장	위 원	반은주
시민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 파주시협의회장	위 원	신경재
통·리장	파주시이통장연합회장	위 원	유재근
법조계	경기북부변호사회 변호사	위 원	이남훈
시의회	파주시 장애인자립위원회 연합회 회장	위 원	이선범
교육계	서영대학교 교수	위 원	장철인
시의회	(사)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동행 파주시지부 지부장	위 원	최창섭

※ 명단은 가, 나, 다 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일시 : 2026. 10. 8.(목) 10:00~11:00

□ 장소 :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신관 3층)

□ 참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9명 참석

□ 회의내용

-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지급액 잠정 결정의 건
-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액 결정의 건

□ 회의록 : "붙임"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6년 10월 8일(목) 10시00분
장소: 파주시청 비즈니스룸

(10시00분 회의시작)

○ **의회법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예산법무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비심의회는 파주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지원하고, 위원님들께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심의·의결해 주시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도 공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촉장은 별도의 수여식이 없는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님들을 한 분씩 소개드린 뒤, 예산재정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비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선출한 후 위원장님 주재로 안건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이어서 예산재정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인사말씀)

○ **의회법무팀장** (설명)
세부사항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을 선출한 후, 선출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본 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김웅기 위원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의회법무팀장** 김웅기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추가로 추천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추천이 없으므로 김웅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웅기 위원님을 파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훌륭한 덕망과 풍부한 경륜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의 책임감과 공공성은 물론 파주시의 여건과 시민의 눈높이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파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는 성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05분)

○ **위원장** 10명 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2.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 활동비 지급액 결정의 건.
3.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액 결정의 건.
4.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기준 결정의 건.
5. 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
6. 주민 여론조사 질문 문항 결정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정비 심의위원회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 **위원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회의록은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사회자님이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법무팀장**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회의록은 공개됩니다.

○ **위원** 예.

○ **위원장**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예.

○ **위원** 공개를 해도 되지 않아요?

○ **위원** 원래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 **위원장** 공개를 하게……
○ **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예, 이의 없으므로 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 활동비 지급액 결정의 건

○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지급범위 내인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예.")
이의 없으므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액 결정의 건.

○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월정수당 잠정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법무팀장님은 2027년도 월정수당 잠정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설명)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7년도 월정 수당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000라고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가 처음 해본 것이라서 사실 며칠동안 우리 파주시 경제와 주변의 지역들에 대한 상황들을 좀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페이지 정도 작성을 했는데 의견이, 저희들이 월정수당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만약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5분 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정비의 월정수당을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사 규모 지방자치단체 지급 수준을 핵심 지표로 삼아서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찾아보니까 파주시와 시흥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역도 유사하고 경기 남부에 또 경기 북부에 있어서 발전하는 대표적인 시인데요.
여기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파주시와 유사한 기초단체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객관성 때문에 제가 시흥시를 한번 고려해 봤고요.
그동안 사실 파주시 월정수당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에 맞춰서 연동돼 왔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했던 시흥시와의 초기 기준액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최소한 월 50에서 60만 원 정도 차이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파주시도 시흥시와 비슷한 그런 월정수당을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조정이 과도한 인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 외국인을 포함하면 파주시 인구가 55만이 좀 넘습니다.
저희들 외국인 제외 53만 몇천 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도시 진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흥시하고 파주시하고 일단은 기울어진 출발선을 맞추는 월정수당의 기준점을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정수당 결정 요인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 실적이랄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의원들이 1인당 시흥시와 비교해 봤을 때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시흥시 인구보다도 약 11%가 더 많고요. 죄송합니다. 3,600명, 즉 의원 1인당 담당할 수가 시흥시 같은 경우는 3만 2,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파주시는 약 3만 5,800명 그래서 약 3,200명 정도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업무 부담이 가중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정 활동 범위가 굉장히 광역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흥시는 139.9 평방킬로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파주는 674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시흥시보다도 한 5배 가까운 그런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실제 의원님들이 지역을 이동하고 현장 점검하는데 수반되는 실질적인 비용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았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3차 추경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2억 한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
그런데 여기 2조 얼마……

○ **예산법무과장** 2조 6,000억 원

○ **위원** 2조 6,000억 원 맞죠?

예, 제가 보니까 3차 추경까지 2조 6,000억 원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2조 약 9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보다 5,000억 원 이상이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심의,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올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 발의 입법적인 것이 질적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5년에 보면 원 의원 의안 처리 건수도 우리 파주시만 비교해 봤을 때 2022년 180건이었는데 2025년에 약 240건, 의원 발의 조례 및 비중도 30~35%인데 2025년에는 약 50% 가까이, 5분 자유 발언 시정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연간 30회 정도 있는데 2025년에는 약 평균 55회 정도 됐었고요.
행정 사무 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도 2022년 약 200건이었는데 2025년인가 300건으로 이렇게 광대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정책지원관이 2022년에 1명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7명까지 민선9기에서는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발의 건수랄지 질문이랄지 이렇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실화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다만 앞에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의 26년 재정자립도가 약 32% 정도 됩니다마는 파주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그 시의원들이 1인당 50만 원씩 월 정액 1인당 1년에 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15명을 하면 9천만 원이 들어요.

그럼 사실 1억 원 미만의 예산을 늘리게 되는데 사실 월정수당을 현실화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 금액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떤 생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이런 월정수당을 현실화시키고 본인들도 그와 비슷한 지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정에 몰두하여 어떤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조 6,000억 원의 엄청난 예산과 대규모 인프라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 의원들이 이런 감시 견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해서 수억 원부터 수십억 원까지 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를 막아서 결국 그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9,000만 원 투자가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사견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시민 설득 및 저항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 그래서 인상률을 얼마 정도?

○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7페이지에 보면 50만 이상의 시가 5,543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균이 5,171만 원인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9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지금 10% 정도를 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할 때 8% 인상을 했더라고요.

10% 올라가면 4,856에서 5,161 빼니까 250만 원 정도, 15%, 죄송합니다. 15%로 정정하겠습니다.

15% 정도는 인상을 해드려야……

그 정도로 해야지, 물론 시흥시도 올해 예산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흥시하고 격차를 이렇게 월 50만 원씩 했을 때 1년에 600만 원 정도니까요.

기존에 받았던 4,800에서,

○ **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15% 인상안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 **위원** 예, 15% 인상안을 제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께서 15% 인상안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수치상으로 비교하시는 거면 사실 되게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심의 위원으로 참석한 게 두 번인가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정서라는 게 있어요.

정서라는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퍼센티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시민 여론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수치상 가지고 우리가 이거 인상하겠다라고 의견을 낸 것을 설득시키기에 너무 한계가 크고요.

그리고 각자 느끼는 바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의정 활동의 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무난하게 공무원 인상률 기준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북파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 저희 북파주 쪽은 광역이라서 넓은 지역에서 의회 활동도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기도 하시고 저기도 가시고 이러시는데 이 모든 차량이나 이런 것들, 기타 식사비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다 부담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도 이거는 최저 생활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현실성에 맞게는 상향을 하게끔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그전에 시의원님들이 하셨던 것들인데 그 시의원 중 한 분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재선을 하실 수 있었는데 자기는 이거를 안 하겠다. 이걸 왜 안 하겠냐, 봉사활동도 좋고 뭐 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건 좋은데 내가 생활이 안 된다." 그거는 제가 시의원이 아니지만 시의원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있고 현실성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의 생각은 그냥 어느 정도 우리 시의원분들의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그냥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과감히, 우리 지금 인상 범위 3.5%에서 8년 동안을 거의 인상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28%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여론조사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예.

○ **위원장** 위원님은 몇 프로 말씀하신 거죠?

○ **위원** 저는 3.5%.

○ **위원** 저도 3.5%로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 알겠지만 식사를 못 하시는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 **위원** 아니, 식사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넓은 지역을 관할을 하시고 민원도 해결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기 차량을 대서 다 운전을 하시고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성에 맞게 아까 여기 우리 있던 의정비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제가 봤을 때 최저 생활비에 조금 더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최저 봉급액에서 했을 때 지금 공무원들보다는 공무원들만큼의 일을 하는데 공무원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그럼 지금 정확하게 플러스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론조사고 공청회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플러스는 몇 프로가?

○ **의회법무팀장** 3.5%.
○ **위원** 그럼 그 이상 되면 여론조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공청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상 폭이 3.5% 이상 되면 여론조사로 가든지 공청회로 가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 그런데 공청회에서는 결정 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왕이면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봐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도 된다,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올려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저도 25% 선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그럼 네 가지 안이신데.
○ **위원** 25%나 28%나.
저는 어차피 지금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 어차피 여론조사가 나가면 시민들이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의원들이 하는 게 적다 그러면 여론조사 통과가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이 보기에 의원들 잘 된다 이러면 통과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 **위원** 만약에 여론 조사했을 때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위원**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위원** 아니, 간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 **의회법무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정액을 결정하게 되면 잠정액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정액에 대해서 주민들은 낮다, 적정하다, 높다로 의견을 표현하시게 되고요.
1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높다고 응답하는 경우의 예시가 있습니다.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 보기의 최대 금액, 최소 금액을 잠시 후에 정하긴 할 텐데요.
그걸 적용해서 답변 나온 주민 의견 결과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 인상률이 높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예시문항 1번에 응답하시는 분들 비율이 제일 많은 경우에는 4,817만 원에서 4,855만 범위 내에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 **위원** 만약에 낮다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 **의회법무팀장** 낮다라고 나오면 설문지 12쪽 중간 부분에 예시문항이 있습니다.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 예를 들어 여기서도 문항 설문이 제일 많은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의원님들께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파격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심의 위원님들이 이거를 파격적으로 28%까지 한다라는 건 조금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금 저희 인상률이 28%라도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시의원님들 다 전체를 하더

라도 1년 예산이 1억이 조금 안 돼요.
우리 전체 예산이 1조 몇 천억인 상황에서 0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인상한다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올린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할 수 있게끔 현실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내신 걸로 알아듣고요.
네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1님께서는 15%, 위원 2님께서는 3.5%, 위원 3님께서는 28%, 위원 4님께서는 25% 인상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각 안을 대상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 나가면 이 플러스를 다 넣고 내보내나요?
우리가 정한 플러스를 갖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나요?

○ **의회법무팀장** 맞습니다.

○ **위원장** 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 명당 하나의 안에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위원장님, 거수하기 전에 25나 28은 같은 걸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 **위원** 상관 없습니다.

○ **위원** 25나 28 저는 같은……

○ **위원장** 그거는 협의를 하셔서 한 가지 안으로 그럼 결정을 하셔서.

○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25%로 갈 건지, 내가 28로 갈 건지 해서, 뭐 거기서 거기 같아요.

○ **위원** 거기서 거기인데요.

○ **위원** 우선 25% 정하시죠.

○ **위원** 예. 25%하시죠.

○ **위원** 예, 25로 해서 같은 걸로.

○ **위원장** 25로?

○ **위원** 예.

○ **위원장** 그럼 세 가지 안으로 가겠습니다. 15%, 3.5%, 25% 이 세 가지 안으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분에 한해서 한 번의 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없음)

○ **위원** 저는 25%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25%로.

○ **위원장** 15%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 **위원** 예.

○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2안은 3.5%.
(3명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3안 25%로.

(5명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법무팀장** 위원장님도 표결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위원 4 퇴실 10시 35분)

○ **위원장** 어디 나가셨나요?

○ **예산법무과장** 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요.

○ **위원장**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호안으로 5표로 다수가 찬성하셨습니다.

결정된 재적 인원 10명 중 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25% 인상으로 인상하는데 찬성하시면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 **위원** 위원장님까지 여섯 분입니다.

그래도 1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 **위원** 7명이 돼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지금 아홉분이면 몇 분이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 **위원** 아니, 지금 한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7명을 꼭 채우게 되려면 이게 오늘 하루 종일 가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10명 중 7명이 찬성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데 다시 한 번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에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70% 되나요?

○ **위원** 사회자님, 전체 출석 인수의 70%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자의 70%가 되는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 **의회법무팀장** 재적 위원으로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10명이 재적이니까 10명에서……

○ **의회법무팀장** 10명, 예, 맞습니다.

○ **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한 분이 오늘 병가로 참석이 안 됐지 않습니까?

9명으로 좀,

○ **위원** 아니, 재적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8% 인상할 때 그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거 가지고도 저항이 엄청 났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이게 지역적인 정서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5%, 현실적인 타당한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밀어붙였다가는 아마 전화통에 불 날 수도 있어요.

○ **위원** 혹시 8%대도 여론조사하지 않았나요? 공청회를 했나?

○ **의회법무팀장**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원** 저도 8%대 나왔었거든요.
그때 왔었는데 여론조사로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 **위원** 어차피 이게 3.5% 넘어가면 8%나 10%나 25%나 어차피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 **위원장** 3.5%가 넘어가면 무조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일단 우리 지금 7명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죠?
○ **위원** 그러면 오늘 결석하신 분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변호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수해도 되는 것이죠?
○ **위원** 참석은 아니잖아요.
○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위원**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 **위원** 지금 저 한 분은 어디 가셨나요?
○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3.5%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25%에 반대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지금 한 분이 안 되셔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예.
○ **위원** 그런데 지금 8%나 10%나 15%나 어차피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판단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가 과도하면 또 과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지금 이렇게 지역 정서에, 그런데 이쪽 저는 갑 지역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을 지역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데 25% 절대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25%가 최소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게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결정이 두 분이서 안 되시면 안 되잖아요.
○ **위원** 회의 진행 안건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25% 거수하는 분들이 다수가 계시고 다른 의견은 저 같은 경우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회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들 모아가지고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 **위원** 한 분이 오셔야 되겠네요.
○ **의회법무팀장**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 **위원** 아니, 오늘이 아니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의회법무팀장**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이 여론조사와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4일 전에 공고를 진행해야 되고요.
여론조사도 안건 협의나 이런 것들 다 진행하면 최소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관계로 오늘 일정을 잡았던 사항이었거든요.
○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는 사실은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결국은 여론조사가 블라인드인 것이니까 그걸로 해서 하는 것이, 혹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6 대 3으로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후에 다시 한번 위원회 활동 열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이다 보니까 주변에 교수님들이 고등학교 홍보를 많이 나갑니다.
그럼 똑같은 파주 지역이어도 이 파주 금촌이나 운정 지역에 나가는 교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파주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교수들이 있는데 출장지는 똑같습니다.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수님들이 고등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만 주고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가서 충분히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파주시가 재정 자립도도 약하고 어렵지만 우리 학생하고 의원님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두게 되면 사실은 조금 더 성실하게 의정 활동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3.5% 결정하신 분의 마음을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증액을 했을 때 예산 총액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굉장히 적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인상률이라는 이 퍼센티지를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 정서라는 게 공무원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시의원보다 공무원들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률은 3.5%인데 시 의원들은 25%다 이거는 심각하게 반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3.5%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8년 동안 인상이 안 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이 계속됐잖아요.

○ **위원**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의원들은 안 됐잖아요.

○ **위원** 아니요.

○ **위원** 아니, 같이 되셨어요.

○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다음에 회의를 또 여는 것보다는 조정을……

○ **위원장**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5분간 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안 나면 인상 폭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500명 이상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나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안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로 안 가면 3.5%는 상관이 없는데 여론조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두 위원님이 인상 폭이 높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을

못하고 계시는 건데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3님 잠깐 나가셨나요?

(10시 49분 위원 3 입실)

3.5% 하고 25%면 너무 폭이 넓어서 이게 조정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잠깐 조정을 좀 하셨나요?

○ **위원**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여론조사에서는 몇 프로든 간에 어떻게든 우리가 낸 안건에 대해서 결정이 나나요, 그 플러스에 대해서는?

○ **의회법무팀장** 여론조사 예시 13쪽 보시면 됩니다.
13쪽 하단에 “현재 파주시 지방의원은 연간 4,865만 원의 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만 이상 시는 평균 5,543만 원이고 경기도는 5,171만 원입니다.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의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2027년도 적용할 파주시 지방의원 의정비를 얼마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지방 의원에게 지급할 연간 얼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잠정액을 정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 낮다, 2번 적정하다, 3번 높다 이 조사한 결과 적정하다라고 하면 조사가 완료되고요, 여기서 낮다라는 응답이 많을 경우 이 밑에 2번 문항으로 바로 자동 설문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잠정액이 낮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거에 대한 낮다에 대한 거는 앞에 페이지에 있었고요, 그 표에 1, 2, 3번부터 5번까지 거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높다면 이것도 또 질문응답이 진행 됩니다.

○ **위원** 위원장님, 일단 다시 한번 거수해서 안 되면 다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 **위원장** 아니,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여론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입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 **위원장** 그러니까 25% 하자고 그러시는 분들이 조금 양보하시고 또 3.5%에서 조금 양보하시고.

○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만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아서……

○ **위원장** 그러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폭이 워낙 커서.

○ **위원** 다음 일정을 잡아도 위원님들이 10분이 다 참석해야지, 그중에 또 한두 분 안 오셔 버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최종 결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회의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종료)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일시 : 2026. 10. 26.(월) 10:00~11:00

□ 장소 :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신관 3층)

□ 참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9명 참석

□ 회의내용

-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액 결정의 건
- 2028 ~2030년 월정수당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기준 결정의 건
-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
- 여론조사 질문 문항 결정의 건

□ 회의록 : "붙임"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6년 10월 26일(월) 10시00분
장소: 파주시청 비즈니스룸

(09시55분 개의)

○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파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회의 여부를 공개 결정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 활동비를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액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7년도 월정수당 잠정액 결정의 건.
2.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기준 결정의 건.
3.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의 건.
4. 주민 여론조사 질문 문항 결정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월정수당 잠정액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께서 전체 회의 결과와 검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설명)

○ **위원장** 간사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먼저번에도 내용 자체를 다 들은 거고 오늘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설명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먼저 찬반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에 3.5%, 2항이 25%였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이 나와서 최종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결해 볼까요?

○ **위원** 또 하나 여기서 이거를 꼭 거수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투표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 **위원** 무기명투표 식으로, 거수로 하는 것보다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가서도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 들고 안 들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걸 가지고 그냥 무기명투표 식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그렇습니다.

○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비밀 투표로 하겠습니다.

○ **위원**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예.

○ **위원** 지금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수술 관계로 참석을 못 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보수를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고 계시냐 그랬더니 한 25위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일하시는 만큼 걸맞게 드리고 또 그만큼 일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내봤습니다.
저는 거수도 그렇고 비밀 투표도 그렇고 거의 이루어진 부분을 가지고 가결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25%에 동의를 하거든요.

○ **위원장** ○○○위원님, 의견 좋으신데요.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 의견은 참고로 알아 듣겠습니다.

○ **위원** 예, 제 뜻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예.

○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에다 자기가 원하는 플러스만 쓰면 되는 거죠?

○ **위원장** 아니, 플러스로 말고요. 1번이 3.5%, 2번이 25%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하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플러스로 적지 마시고 1번, 2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이 3.5% 2번이 25%.

○ **위원** 일단 비밀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비밀 투표에 찬성을 하는지부터 의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밀 투표로 진행을 하시면 이게 결과적으로 회의 내용 자체가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 인상률에 맞춰서 3.5%가 채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밀 투표에 의한다면 제 의견 자체가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비밀 투표에 찬성을 하는지부터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예, 그러면 비밀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거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비밀 투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밀 투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 중)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제2안이 8표로 2027년도 월정수당 잠정액은 25%, 5,62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설명)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간사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간사** 예, 27년도 월정수당 잠정액이 지금 25%로 정해졌기 때문에 월정수당은 3,820만 원, 의정활동비 1,800만 원까지 합쳐져서 총 5,620만 원입니다.
그런데 28년부터 30년까지는 지금 정한 월정수당 잠정액이 반영된 의정비에서 매년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게 매년 3.5%씩 더 인상을 하겠다는,

○ **간사** 3.5%는 아니고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게 3.9%면 3.9%, 3.5%면 3.5%.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위원장**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되면 그거에 기준해서

○ **간사** 매년 그 인상률만큼 인상할 건지 거냐 아니면 격년으로 인상할 건지, 동결할 건지 등을 결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 **위원** 지금 안을 내는 건가요?

○ **위원** 쉽게 말해서 저희가 28년부터 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비 몇 프로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내면 되는 걸까요?

○ **간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그러면 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매년 인상률만큼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저는 이번에 25% 가결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과다하게 인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부터 26년 사이에서 최대로 인상됐던 게 8% 수준인데 한 번에 좀 과다하게 인상이 됐으니까 향후에는 동결을 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25% 인상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결정된 게 아니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 **간사** 예.

○ **위원** 그럼 여론조사 자체에서도 지금 25%에 대한 게 문제가 돼서 깎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간사** 예.

○ **위원** 그럼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정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지 않을까요?
여론조사에서 25%로 통과가 됐을 때 그다음에 정확한 액수가 나왔을 때 정해야지,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이걸 지금 정하는 건 맞지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간사** 그러면 3차 회의 때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한 이후에 다시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걸 지금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는 그게 결정된 다음에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이거 여론조사는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에요?

○ **간사** 다음 안건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할 건지, 여론조사를 할 건지 우선 그것부터 의결이 되어야지 되는 상황이라서요.
여론조사로 결정이 되면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위원** 질문문항에 그럼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간사** 질문문항에 보기가 있거든요.

예를들어 5,620만 원이 높다라고 설문에 응답을 하면 다음 질문에서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에 보기에서 5,000만 원 전후가 ‘적정하다’라고 답변이 나오면 그 의견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전후로 해서 어느 금액으로 정할 건지는 이 회의에서 정해주시면 되고 그게 결정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2028년부터 30년까지 인상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하자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십니다.

○ **위원장** 그러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 인상 반영 기준 결정의 건은 3차 회의 때로 여론조사 끝나고 나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일동 “예.“)

예, 여론조사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3항입니다.

월정수당이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초과 인상이 결정되어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설명)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공청회와 여론조사 중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견 수렴 방법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두 가지 형식인 것 같은데,

○ **위원장** 예, 공청회, 여론조사.

○ **위원** 예, 공청회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과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예.“)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여론조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여론조사 질문 문항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설명)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질문 문항에 최소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최소 금액을 2026년 월정수당 대비 몇 프로 인하하였으면 하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게 지금 최소, 최대로 잡은 게 어떻게 잡은 거죠?

○ **간사** 행안부에서는 월정수당 최소 금액은 2026년 월정수당보다 낮게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금액에 대한 기준점은 정해진 바가 없고 현재 의정비, 인구수,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주민 의견조사를 할 때 그 보기 문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금 잠정액이 25% 5,620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 의견 조사 3번 질문 문항 예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620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응답이 나오면 설문조사는 종료가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5,620만 원 25% 인상률이 너무 높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시게 되면 25%보다 낮은 금액의 1, 2, 3, 4, 5번 보기 질문 문항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시는 현재 월정수당의 마이너스 1.25%를 적용해서 4,817만 원을 정한건데요.

참고로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마이너스 5% 적용한 금액을 산출했고요, 저희는 지금 26년 금액이 낮은 관계로 마이너스 1.25%를 적용해서 4,817만 원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예시로 제시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 그렇게 되면 25%로 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25%인 1번, 즉 4,817만 원에 다수 의견이 오게 되면 4,817만 원으로 오히려 의정비를 떨어뜨려서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주지 말고 이걸 조금 더 올릴 수는 없나요?

○ **간사** 26년도 월정수당 금액보다 낮아야 돼요.

○ **위원** 낮아야 되니까.

○ **간사** 예.

○ **위원** 그 최소 금액이?

○ **간사** 그래서 마이너스 0.5%, 1% 이렇게는 정할 수는 있어도 26년 월정수당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1번이 되게 되면 오히려 작년 의정비보다 더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 **위원** 그러면 이거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어서 5번이 1번이 되고 이렇게 해도 바꿀 수가 있나요?

○ **간사** 그거는 잠시 후에 의견 내주시면 되십니다.

○ **위원장** 위원분들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안대로 1.25% 마이너스로 해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현재는 그게 가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질문 문항의 최소 금액을 2026년도 월정 수당 대비 1.25% 인하한 4,817만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문항의 최소 금액을 2026년 월정수당에서 1.25% 인하한 4,817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론조사 질문 문항에 반영할 최대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최대 금액을 2026년 월정수당 대비 몇 프로 인상하였으면 하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파주시 의정비가 지금 4,856만 원이잖아요.

지금 50만 이상 시 5,543만 원보다 낮은 수준인데 우리가 25%를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의정활동비는 고정이고 월정수당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월 318만 원으로 오르는 거더라구요
월정수당만 계산했을 때는 25%가 오르는 데 의정비로 따졌을 때는 15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적어봤는데요.
파주시 질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현재 파주시 시의원의 의정비는 약 4,856만 원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평균의 5,543만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기초의회 중 최고액은 6,049만 원입니다.” 이거를 저는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질문지에.
“현재 총액 기준으로 15% 인상하고 연간 5,620만 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좀 결정하고 싶은데 위원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간사** 우선 최대 금액 먼저 정하고 그 이후에 질문 세부 사항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예, 최대 금액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30% 인상 5,772만 원 말씀해 주신 건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저희가 25% 인상안을 처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최대 금액도 25%에 맞췄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안을 한번 내봅니다.

○ **위원장** 25%?이요

○ **위원** 예, 5,620만 원.
○○○위원님은 30% 5,772만 원

○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최소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최소도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 **간사** 최소 금액은 아까 의결을 하셨는데요. 2026년도 월정수당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 아까 마이너스 1.25%로 결정하여 의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최대를 잡아서 여론조사 들어가도 25%도 안 잡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올려놓아도 여론조사에서 15%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 잡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저는 5,722만 원이 어차피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5,722만 원 말씀드린 거고요.

○ **위원** 이게 주민 의견 조사니까 25% 인상안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30%까지 너무 세게 올라가면 거부감이 세지 않을까요?

○ **위원** 그냥 5,620만 원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 **간사** 지금 잠정액과 최대 금액을 동일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민 의견 조사 2번 문항 낮다라고 질문을 할 경우에 그때는 1번 보기부터 5번 보기 모두가 5,6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정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예, 제가 이해됐습니다. 30%해야 되겠네요.

○ **위원** 결정하시죠.

○ **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에 질문 문항의 최대 금액을 2026년 월정수당 대비 30%를 인상한

5,772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질문 문항의 최대 금액은 2026년 월정수당 대비 30% 인상한 5,772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을 결정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1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주민 의견수렴 시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조사 설문서 문항에 기존의 의정비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등 편향적인 질문하는 방식, 주민의견조사 설문서 문항에 기존 의정비 금액의 인상을 전제로 질문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3쪽에 주민 의견조사 표준 질문 문항 예시를 들어놓았습니다.

우선 여론조사는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면접이 중단되고요.

파주시 주민이어야 설문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시로 든 질문 문항은 “현재 파주시 지방의원은 연간 4,856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와 여건이 유사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연간 의정비 평균 금액은 5,543만 원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연간 의정비 평균 금액은 5,171만 원입니다. 파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의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2027년 적용한 파주시 지방의원 의정비는 2026년 대비 15% 인상, 월정수당만 대비해서는 25% 인상한 연간 약 5,620만 원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항은 넘어가겠습니다.

“2027년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연간 5,620만 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낮다, 적정하다, 높다라는 답변이 이루어질 거고요.

적정하다라고 되면 조사가 완료되고 지금 높다라고 3번으로 표시가 되면 3번 질문으로 바로 이어져서 “그럼 파주시 지방의원의 내년에 적용할 의정비로 연간 5,620만 원이 높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 사항 보기는 12쪽 하단에 있는데 25% 적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간사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질문지에서요, 아까 얘기했던 편향적인 질문 방식을 빼고 27년 적용 의정비를 26년도 월정수당 대비 25% 인상을 하고 전체 총액 기준으로 15% 인상된 연간 5,62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문구를 바꾸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 **위원** 여기에 경기도 기초의회 중 최고액은 6,049만 원이다 이건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 **간사**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이걸 빼고 2027년 의정비를 월정수당은 25% 인상, 전체 총액 기준으로는 약 15% 인상된 연간 5,62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는 바꾸면 어떨까요?

○ **위원장**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해 2027년 적용 의정비를 월정수당은 25% 인상, 전체 총액 기준으로 약 15% 인상된 연간 5,620만 원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높다라고 나왔을 때 1, 2, 3, 4, 5번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걸 반대로 할 수 있는 안으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5, 4, 3, 2, 1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월정수당 25% 인상, 전체 총액 기준으로 약 15% 인상된 연간 5,620만원 조정하는 제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일동 “예.“)

○ **간사** 그리고 보기 관련해서 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 사항 중에 높다라고 나왔을 때 1, 2, 3, 4, 5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숫자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바꿀 수 있냐는 거를 물었거든요.

○ **간사** 여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우선은 가이드라인에서는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 인상안 주민 여론조사가 진행됐을 때, 보기 문항이 높다라고 했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순으로 높은 금액부터 낮은 금액 순으로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 **위원** 11페이지에 아까 금지사항 있잖아요. 그러면 바꿨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위원** 제가 여론조사할 때 경험상 보면 끝까지 잘 안 듣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1번으로 하는 게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위원** 바꾸자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 **위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문항을 이렇게 해서 5, 4, 3, 2, 1을 거꾸로,

○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역순으로 의견을 내주신 거죠?

○ **위원** 예.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의원일동 “예.“)

○ **위원** 아까 여기 금지사항을 읽어주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안 되면 의견대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알아봐서 바꿔도 된다고 했을 때는 하고, 안 되면 지금 순으로 가는 걸로 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건 어떻습니까?

○ **위원** 역순으로 바꾸되 행안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 이거예요.

○ **위원장** 역순으로 안 되면 원안대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일동 “예.“)

의사일정 제4항 여론조사 최소 금액 4,817만 원, 최대 금액은 5,772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여론조사 질문 문항은 ○○○위원님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늘 안건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친 후 11월 9일 오전 9시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예.“)

○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에 9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종료)